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1537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2021.11.16]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1.04]

help@
dodeul.co.kr

[홍닝차]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도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도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라길 46(미음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22-85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도들	홍닝차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라길 46(미음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18.11.27	2018.11.30	임동현	1522-8517
	법인등록번호	180111-1187152	사업자등록번호	768-86-0118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합	카레온가맹 본부	규심	2024.9.25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번길 80, 2층 (대연동)	노경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홍닝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홍닝차	
상 호	홍닝차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240121218 출원일자 : 2024.07.03.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1,424,000	-	-
2022년	-	-	-	1,630,931	-	-
2023년	-	-	-	1,573,716	-	-

(주식회사 도들은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동현	대표이사	2024.09.25~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예제	사내이사	2024.09.25~현재	이사	관리
가맹사업 관련 임원	노경환	대표이사	2021. 3.2~2024.09.25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 노경환	가맹본부/카레온	가맹사업경영	2021.08.09.~현재	카레온 (등록번호 :2020587)
대표 노경환	카레온가맹본부	가맹사업경영	2021.11.16.~2021.9.27	박덕례국산김치찌개와 동태탕(등록번호:20215375)

**** 2024년 9월 25일 시점의 피합병.폐인수 기업의 특수관계인 현황입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홍닝차	간판,인테리어 및 상표권 관측홍보	출원2024.07.03.	출원 제4020240121218	주식회사 도들	-
		등록일자:	등록번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홍닝차] 가맹사업 현황

1. [홍닝차] 을 시작한 날: 가맹점 체결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 시작한 날 : 2024.07.16

2. [홍닝차] 연혁

명칭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카레온 가맹본부	규심	노경환	2021.08.09~2024.09.25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번길 80, 2층 (대연동)
주식회사 도들	홍닝차	임동현	2024.09.25~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라 길 46(미음동)

3. [홍닝차]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홍닝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음료	오리지널 레몬티 홍린이레몬티 큐컴버(오이) 퓨어 자스민 레몬티 자스민 파인애플&망고 자스민 패슨프룻 수박주스 복숭아 아이스티 아.샷.추 베이비밀크 아메리카노 대용량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홍린이라떼 퓨어 얼그레이 밀크티 홍콩 망고사고 화채버킷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홍닝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홍녕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	-	-	0
2022	0	0	-	-	-	0
2023	0	0	-	-	-	0

6. [홍녕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2024년 09월 25일 이전의 피합병.피인수기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이며 현재 주식회사 도들은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홍녕차] 가맹사업은 2023년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8. [홍닝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홍닝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입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홍닝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홍닝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하단동지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7	051-204-2420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

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홍닝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금액 없음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되지 않음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 교육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되지 않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7,3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5,250	8,525	계약시	반환되지 않음	33㎡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가맹본부	34,100	3,410	계약시 협의	소요비용 제외후 반환	간판비용 포함
인테리어 (내장공사)		38,500	3,850			
최초 공급 상품 비용		7,150	715			기물/오픈준비 품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비용		1,100	110			pos기
간판		4,400	440			간판/사인물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계약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 가맹점 체결 및 당사 금전 입금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별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 약 요 청 일 자	위 약 별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0%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계약 체결 후 교육의 시행	교육비 전액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220	매월30일	없음	무형재산권	1년 무상
리스료	가맹본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100% 가맹사업자 0%~50%	광고업체 계약시	업음	광고업체 지불시	광고실행시 고지

관측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 별로 산정	관측업체 계약시	없음	관측업체에 지불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3,300	교육 훈련전	없음	무형재산권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미지정		협의	없음	설비업체에 지급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설치전	설치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미지정	해당없음		없음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미지정	해당업체와 상의 (실비)	협의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미지정	가맹점사업자 의 상황에 따라			해당없음	매출액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판단
회계처리 비용	미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POS 사용료	미지정	해당사항없음			관리비용	
지연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없음	반환불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주식회사 도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홍닝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홍닝차]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금 삼백삼십만원 3,30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 25조 참조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홍닝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홍녕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오리지널 레몬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가맹계약서 제36조 참조	
홍린이 레몬티			
자스민 파인애플&망고 레몬티			
자스민 패션프룻레몬티(with야구르트)			
퓨어자스민레몬티			
큐컴버레몬티(오이)			
아메리카노			
대용량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홍린이라떼			
퓨어 얼그레이 밀크티			
수박주스			
복숭아 아이스티			
아.샷.추			
베이비밀크			
핸드메이드대추차			
홍콩 망고사과 화채버킷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오리지널 레몬티	3,500	이메일/개별통보	
홍린이 레몬티	3,500		
자스민 파인애플&망고 레몬티	3,500		
자스민 패션프룻레몬티(with 야구르트)	3,500		
퓨어 자스민 레몬티	3,500		
큐컴버레몬티(오이)	3,500		
아메리카노	1,500		
대용량 아메리카노	3,000		
카페라떼	3,500		
홍린이라떼	4,000		
퓨어 얼그레이 밀크티	4,500		
수박주스	4,000		
복숭아 아이스티	3,000		
아.샷.추	3,000		
베이비밀크	1,000		
핸드메이드대추차	6,500		
홍콩 망고사고 화채버킷	12,8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커피/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홍닝차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홍닝차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홍닝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홍닝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5조3항가 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3항나 목
○ 가맹본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3항다 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 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5조3항다 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25조 [상품 및 서비스공급 중단]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1항1목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6조1항2목
○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품질기준 준수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36조1항3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제36조1항4목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6조1항5목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1항6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제36조2항 1호

시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6조2항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2항3호
○ 삭제	제36조2항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36조 2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초과)	제36조2항6호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명령 이후 1년 이내 같은 사항 재위반	제36조2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2항8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6조2항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6조2항10호

개점전 해약에 대한 위약금	관련 계약조문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 39조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 39조
○ 계약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 39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카레온 가맹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와 협의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협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위탁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홍닝차 지역 내에서] 귀하가 [홍닝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홍닝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08:00~ 오후 22: 00	매주 월요일 휴무	가맹본부과 가맹점사업간의 협의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1명이상	직접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있음	카레온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있음	카레온 가맹본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홍닝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사업자간에 균등하게 배분	광고계획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여부결정 → 가맹점 부담액제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이벤트 행사(전국행 사)
	상품광고+ 가맹 점 모집광고	광고비의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사업자간에 균등하게 배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관측행사	공동관측활동	협의	협의	행사계획공고→가 맹점부담액제시→ 가맹점의 행사참여결정→행 사시행→종료후 최종분담금 확정	관측행사 동의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적용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계약조문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홍닝차]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한다.	제46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영업비밀유지 의무,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한다.	제46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 (₩300,000원)씩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5항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본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아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x 오만원정 (₩5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으로 한다.	제46조6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6조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0 ~29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8~27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7(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5(2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의 해결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 48조 1항
○ 당사자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 48조2항
○ “본 계약”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48조 3항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	포환경개선 : 40%	본부 부담액 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 급 (단, 가맹본부 와 가맹점사업 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 에 서 분할지급 가 능) ○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 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 일 로 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 니 하 거 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	----------------	--	---	--

			의 40%)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집기·장비 교체비용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흥녕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카레온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조리/서비스/운영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홍닝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3,300	최초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25조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중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	0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0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크 리스트		
년 월 일 가맹점주 (서명 또는 인) / 가맹본부 (서명 또는 인)		체크
청결체크 (홀 , 화장실)		
1. 홀 바닥 쓸기 및 닦기		
2. 테이블 의자 닦고 냅킨 ,수저 가지런히 채우기		
3. 정수기 필터갈기 및 청소		
4. 카운터 포스기 및 정리정돈		
5. 간판, 포스기 전원켜기		
6. 쇼케이스 냉장고 주류 선입선출하기		
7. 화장실에 화장지 채우기		
8.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거울청결		
9. 화장실 바닥청소,배수구 확인		
10. 손세정제 채우기		
11. 화장실 휴지 비우기		
품질 체크 (주방)		
1. 냉장고 냉장,냉동 성애 제거 및 온도는 잘 맞춰있는가		
2. 튀김기 청결 및 기름을 자주 가는가		
3. 밥솥, 솥 청결 그날 그날 밥하기		
4. 후라이팬 냄비등 세척을 자주 하는가		
5. 식재료 유통기한 확인		
6. 전자렌지 청결한가		
7. 하루에 한번 마칠 때 주방 바닥청소		
8. 수란 냄비 물을 자주 갈아주는가		
9. 도마 ,칼 ,가위,집게 등은 청결한가		
10.화구 청소 일주일애 두 번은 하는가		
11..식기세척기 세정제 유무 및 물은 이틀에 한번은 가는가		

(별첨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3) 구입강제품목 내역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 4)가맹사업자의 부담
-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가맹본부: [주식회사도들] 대표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 수령날짜 및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홍닝차]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에 제공받고, 가맹계약서는 20 년 월 일에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 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